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군용차량의 안전조치 방안 마련 등 〉

■ 추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20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군용차량의 불용 결정’ 조항 신설(안 제13조의3제1항)	2
2. ‘군용차량의 안전조치 방안 마련’ 근거 신설(안 제13조의3제2항) ...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추미애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5. 4. 25.
3. 회 부 일 : 2025. 4.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성능·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은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노후된 군용차량은 불용 결정하고 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군용차량의 불용 결정’ 조항 신설

- ☐ 개정안은 군용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사용연한,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군용차량에 대해 불용결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1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절 <u>처분</u> <u><신 설></u>	제4절 <u>운용·처분</u> <u>제13조의3(군용차량의 안전 확보)</u> <u>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군수품인 차량(이하 이 조에서 “군용차량”이라 한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사용연한,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u>

- ☐ 군수품은 현행법 제2조1)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해군·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으로서, 전투장비 및

1) 「군수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보조장비 등의 전비품과 전비품 이외의 통상품으로 구분됨.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전비품”(戰備品)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3.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② 법 제3조에서 “통상품”(通常品)이란 군수품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전비품(이하 “전비품”이라 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 군수품은 현행법 제13조제1항2)에 따라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 지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매각을 하거나 폐기하고 있음.

□ 한편, 국방부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수품 관리 훈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노후화로 인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군수품 등에 대해서는 불용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2) 「군수품관리법」 제13조(불용의 결정 등) 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군수품
2. 국방관서나 각군이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 중 관리전환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할 수 없는 군수품
3.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할 가치가 없는 군수품

「군수품 관리 훈령」

제36조 (불용결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해서는 제37조를 적용하지 않고 불용결정을 한다.

1. 신장비(성능개량을 포함한다)·신기술 도입으로 인하여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군수품
2.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 중 관리전환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할 수 없는 군수품
3. 노후화로 인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군수품
4. 대결함 발생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군수품(다만, 대결함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별표5와 같다)
5. 제도변경, 정책결정, 부대해체 등으로 편제 초과 또는 도태결정된 군수품
6. 장비도태 및 무기체계 변경으로 수요가 없는 탄약 및 탄약 정비조성품 등
7.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결과 "폐기"로 결정된 탄약과 각 군 자체 기능시험 및 이화학 분석시험, 탄약검사관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불량탄 및 위험성이 있는 처리대상 탄약으로 판단된 탄약
8. 작전수행 및 경계근무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군건 또는 군마

□ 개정안은 군수품 중 군용차량에 대해서 사용연한이 지났거나 운행거리가 과다한 군용차량에 대해서는 노후화에 따른 운행 중의 위험이 예상되므로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후화된 군용차량의 불용의 결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결정의 판단을 강화하여 군용트럭 노후화 및 기체 결함에 따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과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군용차량 이용 군 병력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부각시켜 군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모든 군수품에 대한 불용결정은 「군수품관리법」 - 「군수

품관리법 시행령」 등의 법령과 이를 구체화한 행정규칙인 「군수품 관리 훈령」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군수품들 중 ‘군용차량’에 대해서만 별도로 특별히 불용결정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법 조문의 경제성³⁾ 및 법 체계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군수품 불용관련 법령 체계]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군수품 관리 훈령
불용의 결정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	불용의 결정 등에 대한 기관별 기능
국방부장관의 승인	불용 결정의 승인 신청	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 계획
군수품의 폐기 결정	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	불용결정 대상
		장비 불용결정 기준
		불용결정의 승인

□ 개정안에 대해서 국방부는 현행법은 차량 및 항공기, 선박, 각종 장비 등 모든 군수품에 대하여 적용되고, 노후화로 인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군수품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군수품 관리 훈령」에서 각각 기준을 정하여 불용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체계를 고려할 때 군수품 중 군용차량에

3) 향후에도 특정 군수품에 대한 불용결정의 법률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경우, 법 조문이 늘어나고 복잡해질 우려가 나타날 수 있음.

대해서만 특별히 불용결정에 대해 규정하기 보다는 기존과 같이 대통령령 및 훈령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군용차량의 안전조치 방안 마련’ 근거 신설

- 개정안은 군용차량 탑승인원의 안전을 위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2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절 <u>처분</u> <u><신설></u>	제4절 <u>운용·처분</u> <u>제13조의3(군용차량의 안전 확보)</u> <u>② 군용차량 탑승인원의 안전을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u>

- 2024년 12월 19일 충북 충주의 19전투비행단 내에서 저녁 식사 후 부대복귀 중 K-311 군용 수송트럭이 차량쏠림 현상 등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탑승자 총 15명(운전석 3명, 화물칸 12명) 중 화물칸 탑승자 2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로 인해 탑승자 총 15명 중 2명 사망자 및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 동 사건에 대해서 군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원이 「국회법」 제123조

제1항4)에 따른 국민동의청원 형식으로 제출되어 현재 청원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동 사건 발생 후 국방부는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의 정비를 통해 군용차량 화물칸에 인원 수송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화물칸 좌석안전띠 설치 등을 포함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개정안은 군용차량 탑승인원의 안전을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군용차량 탑승인원의 안전을 확보·강화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군용차량 이용 군 병력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부각시켜 군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군수품 중 사고가 빈번한 군용차량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품목의 군수품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점

4)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동의청원 동의자수: 5만명 이상

을 고려하여 안전조치 방안 마련 대상의 군수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군용차량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조치 방안 마련의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 다른 조문들과 같이 ‘국방부장관’을 안전조치 방안 마련의 주체로 표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2조의2(총수명주기 관리의 원칙)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의 성능 발휘 보장과 수명주기비용 절감을 위하여 소요결정·획득·사용·보관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사무의 통제) 국방부장관은 국방관서와 각군의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제도와 사무를 통제한다.

제13조의2(탄약의 폐기) ① 국방부장관은 탄약의 수명, 성능평가 결과 및 무기체계 변경 등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내용연수) 국방부장관은 감가상각(減價償却) 등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그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개정안의 조문은 현행법 ‘제3장 군수품의 관리’ 중 ‘제4절 처분’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군수품의 처분 관련 ‘절’에 위치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법 체계상 별도의 ‘절’을 신설하여 조문의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⁵⁾.

5) 예시: 제8절 군수품의 안전조치 제25조의2(군수품의 안전 확보)

장	절	조
제3장 군수품의 관리	제1절 통칙	
	제2절 획득	
	제3절 출납	
	제4절 처분	불용의 결정 등 탄약의 폐기 대여 양도 교환
	제5절 재물조사와 조정	
	제6절 자연감모와 손·망실처리	
	제7절 군수품의 관급	

넷째, 개정안은 안전조치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령인 국방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방부내부를 기속하는 규정에 해당하고, 병영 생활 및 환경 등 다양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대처하기 위하여 국방부령보다는 개정이 용이한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방부의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음.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절 <u>운용·처분</u> <u>제13조의3(군용차량의 안전 확보)</u> ② <u>군용차량 탑승인원의 안전을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u>	제4절 <u>처분</u> <u><삭 제></u>

<u>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제8절 군수품의 안전조치</u> <u>제25조의2(군수품의 안전 확보) 국</u> <u>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u> <u>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u> <u>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u> <u>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u>
---	--

- ☐ 국방부는 군용차량 탑승인원의 안전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방부 내부를 기속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국방부령 보다는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써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08